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54
----------	-----

2020. 6. 24.(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0년 6월 12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6월 15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6월 19일

-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정진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공공기관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위한 지원 사항 및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공공기관의 이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3. 검토보고 요지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서완석)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 및 이전공공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용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같은 법 제46조는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그 밖의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및 제1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 기업, 대학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은 가능함.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대상을 규정함.
-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
- 안 제13조는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입지지원, 이전 지원, 대부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0. 5. 22.~'20. 6. 11.)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지원하고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입지, 이전 지원 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공공기관 유치활동 및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지원을 위한 재정이 수반되는 만큼 입지, 이전, 기반시설 등의 지원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기업 또는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등의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조정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기관 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공공기관” 대신 해당 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 1명은 도지사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공공기관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공공기관등의 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유치활동 지원) 도지사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4조(입지 지원) 도지사는 도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이전 지원) ①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16조(대부료 감면)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내 전입한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6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별이전을 위한 업무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46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약칭: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조(그 밖의 공공기관)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7. 27, 2014. 3. 11>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1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4.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5.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出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6.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제16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 및 절차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8조(대학의 지방이전)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기준·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의 부지 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약칭: 특정연구기관법)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 의학원
6.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과기출연기관법)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개정 2011.12.31>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기 관 명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13. 삭제 <2011.12.31>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의 감면)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에 공공기관 : 100분의 50

□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3.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4.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④ 국가는 제3항의 기관을 신설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 항목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21.>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유치위원회 구성·운영하고 유치활동 지원,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충청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제17조, 위원회 수당 및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사업비

3. 관련 조문

- 안 제11조(수당)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안 제17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제1호~제2호
 - 도지사는 도내 전입한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요인 :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업비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직원에 대한 지원은 공공기관 유치 대상기관인원에 대해 현재 충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의 이주율로 추정

다. 추 계 결 과 : 1,467백만원(도비)

라. 재원조달방안 : 도비

5. 연도별 비용추계서(세출)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위원회 운영 등 4 개 사업	1,467,500	293,500	293,500	293,500	293,500	293,500

※ 단위사업별 비용추계내역 : 별첨

6. 작성자 : 균형건설국 혁신도시발전추지단장 정진원(220-4860)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사업별 5개년(2021~2025) 투자계획

사업명	재원별	사업비(천 원)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4개 사업	도비	1,467,500	293,500	293,500	293,500	293,500	293,500
이주정착 장려금	도비	337,000	67,400	67,400	67,400	67,400	67,400
자녀 전입학 장학금	도비	8,500	1,700	1,700	1,700	1,700	1,700
이주직원 대출이자	도비	1,095,000	219,000	219,000	219,000	219,000	219,000
위원회 운영	도비	27,000	5,400	5,400	5,400	5,400	5,400